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8. 23 선고 2022가단682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

변 론 종 결 2023. 8. 9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. 9. 30. 접수 제27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사실관계

갑 제4호증의 1, 2,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가. 피고는 원고의 자녀이다.

나. 피고는 2021. 9. 30.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8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서 원고를 속여 원고를 주민센터에 데리고 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고 위 각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뒤,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다27825 판결 등 참조).

그러나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5호증, 제7호증의 각 기재와 '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.'는 원고의 변론기일 진술만으로는, 피고가 원고를 속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(한편,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매수자가 피고로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발급신청자란에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가 원고를 속여 주민센터에 데리고 간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, 원고가 고령임을 고려할 때, 담당 공무원이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직접 위 인감증명서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용도의 인감증명서임을 알고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)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청남도 논산시
대 272㎡

2. 충청남도 논산시
도로명 주소 : 충청남도 논산시
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
62.11㎡

